

태풍으로 인한 다발 사고유형의 배상책임 인정기준(안)

'10.09.03
순사기획P

■ 대표 사고유형별 배상책임 인정여부 및 책임비율

유 형	배상책임 인정여부 체크 포인트	책 임 비 율
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주변에 주 치된 차량을 파손하거나 지나가던 행인 을 상해케 한 사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창문 공작물의 부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는지 ○ 창문의 설치 또는 구조상의 결함은 없는지 (신규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·체조업체에 대한 구상검토) ○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를 경험한 사실이 있는지 ○ 차량이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하였는지 아니면 불법주차 상태였는지 ○ 창문 파손의 우려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○ 태풍에 대비한 안전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○ 인근 다른 지역의 유리창도 대부분 파손된 상황인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근 다른 건물에 유리창도 대부분 파손된 경우이고, 기본적인 주의조치를 하였더라도 사고 발생이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 책임없음 ○ 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태풍이라는 자연력(기여 부분)을 70%로 하고 가해자 책임을 30-40%로 제한 ○ 과거 사고경험이 있거나, 부실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책임 50%-60%로 인정
일반 시설물이나 공작물이 파손되면서 대인 또는 대물 피해를 입힌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작물 소유 또는 점유자로서 태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하였는지 ○ 제3자가 보더라도 안전조치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○ 별도의 시설물 위탁 관리업체가 있는지 (구상검토) ○ 정부 또는 지자체와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검토 	

■ 과거 태풍관련 배상책임 유형 및 사례

사 례	책임인정 근거	책 임 비 율
청소대행업자가 쓰레기 매립작업을 하 하였을 때, 해당 "셀마"로 짐중호우가 내려 쓰레기가 인근 포도밭으로 유 입되어 손해를 입힌 사고 (부산고등 법원 89나5386)	장마철 폭우에 대비하여 매립된 쓰레기가 인근 농토에 유입되지 않도록 야 무런 유실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쓰레기를 격치함	포도밭의 피해는 일차적으로 태풍으로 인한 것이지만, 청소대행업자의 책임이 기여하여 손해가 확대됨 (30% 인정)

<p>태풍 "프리티"의 영향으로 카페 유리창이 깨어지면서 그 조각이 건물 앞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의 머리에 부딪혀 상해를 입힌 사고(서울지법 2002가합10412)</p>	<p>○ 인접한 다른 건물의 유리창은 위 사고 당일 바람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일이 없는데, 유독 당해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카페의 유리창만이 바람에 깨어진 이상 위 카페 유리창에는 공작물로서의 하자가 있음. ○ 카페 주인은 같은 날 30분 전에도 유리창이 깨어져 건물앞 도로에 떨어진 일이 있었음에도 간판업자에 유리창을 떼어달라는 부탁만 하였을 뿐 그 외에 다른 안전조치나 건물앞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</p>	<p>태풍이라는 객관적 바람의 특수한 자연적 조건아래 자연력과 공작물의 하자 및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결합되어 발생한 경우로서 가해자의 책임비율은 60%로 인정</p>
<p>펜션 옆 담장에 주차된 차량이 태풍으로 인하여 담장이 무너지면서 피해를 입은 사고 (부산지방법원 2008나4817)</p>	<p>○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○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의 관리를 위임하지 않은 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보수 등의 필요한 철차를 취할 의무있음 ○ 태풍으로 인하여 주변시대의 모든 담장이 무너졌다거나 다른 건축물들이 모두 붕괴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 담장은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</p>	<p>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위 자연력이 결합하여 발생한 경우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분담의 견지에서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해야 할 것임(대법 2000다20694)(35% 인정)</p>
<p>태풍 "나비"으로 인하여 석파이프 창고가 쓰러지며 인근 주차장을 덮쳐 그 곳에 주차중인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(부산지방법원 2006나4905)</p>	<p>○ 창고 관리자는 2년전에도 태풍으로 인한 창고파손 경력이 있었고, 몇 일 전부터 태풍에 대비하는 방송이 있었음에도,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○ 창고 관리자는 태풍에 대비하여 천막을 바꾸고 파이프 기주에 앙카를 박아 고정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였고, 이 사건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, 당연히 천막만을 교체하고 석파이프의 구조물의 기초부분이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한 수리를 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, 창고 관리자가 적절한 모든 안전조치를 다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</p>	<p>피해자로서도 파거 창고 구조물이 2년 전 태풍에 의해 파손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, 마찬가지로 방송을 통해 태풍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, 이에 대비하여 본 구조물이 다시 붕괴될 우려가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창고 관리자들의 책임을 60%로 제한함</p>
<p>태풍 "루사"로 풍유가 내리면서 담의 방류로 순간적으로 유량이 증가해 주변 주택이 파괴되고 침수된 사고에 있어서, 담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(주)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(서울중앙지법 2003가합49042)</p>	<p>담을 관리하는 한국수원은 태풍으로 인한 강우로 담의 물을 방류하며 관련 자재의 적대적분류 및 주면들에게 방류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, 그 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은 없음</p>	<p>한국수력원자력(주)의 책임은 없음</p>